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744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회부일자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77호	김용석의원	'13.8.14.
	제1622호	성백진의원	'13.11.06.

위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14.2.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가. 각 개정조례안은 장기이식 대기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공급부족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이식 혜택을 받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 나아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
- 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대부분 선진국은 우선적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중시하며, 우리나라는 국민홍보 및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상의 홈페이지로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는데,

- 다. 각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민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며,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수 있고,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시장이 포상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유사한 점이 있음.
- 라. 따라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위원회가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강행규정함(안 제6조)
- 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다. 정보통신망상의 홈페이지로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을 조성하여 장기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 라.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장기 기증의 유족

제6조와 제10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할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자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6.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3장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장기기증 접수 및 홍보활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11조 “기증희망자에게”를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단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
- 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u>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u>」 제6조에 따라 <u>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u></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9.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장기 기증의 유족</u></p>
<p>제6조(위원회 기능)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할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6.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p>제3장 장기기증 접수창구</p>	<p>제3장 장기기증 접수 및 홍보활동</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 (생략)</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제></u></p>
<p><u><신설></u></p>	<p><u>② 시장은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신설></u></p>	<p><u>③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u></p>
<p>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u>다음 각 호와 같이</u>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신설></u></p>	<p><u>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단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개설)</u></p>
<p><u><신설></u></p>	<p><u>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u></p>
<p><u><신설></u></p>	<p><u>제13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u></p>